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범위 수정(안 제1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66호, 2024.12.30.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전용면적 120 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져 이로 인해 유발되는 취학 수요에 대응하고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확대 수정

나. 제·개정 내용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범위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오피스텔 실거주에 따른 유발 취학 수요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부칙) 안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산정 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4)

가. 제 · 개정 이유

- 개정(법률 제21722호, 2026.12.3.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의 세부사항 규정

나. 제 · 개정 내용

-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산정 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 업무 처리 시 분쟁 가능성 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